

#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73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대시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나.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에 의거 120다산콜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출연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
- 관련법령
  - 법 률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 - 조 례 :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 
“시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”

## 나. 주요 사업

-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운영 (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)
  - 시정·구청 상담서비스 제공
  -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
  -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
  -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
  -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
  -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
  - 재단 사업관련 업무시설 관리
  -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·운영 및 관리
  -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## 다. 출연의 필요성

-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 기능을 수행하여 시민서비스 질 향상 및 시민중심 소통행정 실현
- 상담관련 과학적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 시정서비스 개발 및 제공

## 라. 기관현황

- 소재지 :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8길 23
- 규모 : 연면적 4,615m<sup>2</sup> (지하1~지상5층)
- 위치도 및 전경사진

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시민봉사담당관 민원기획팀 안현주 (☎2133-6542)

# 2021년도 120다산콜재단 출연금 편성(안)

예산(안)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예산(안) (B)	2021예산(안) (B)	증 감(B-A)	(B-A)*100/A
				(x-)
출연금	(x-) 23,031,534	(x-) 29,144,657	(x-) 6,113,123	(x-) 26.5

출연금 편성내역

과목구분	2020년 예산(안)	2021년 예산(안)
출연금	○ 120다산콜재단 출연금 = 23,031,534천원	○ 120다산콜재단 출연금 = 29,144,657천원
	- 인건비 = 17,202,433천원	- 인건비 = 19,703,100천원
	- 운영비 = 5,397,528천원	- 운영비 = 7,265,738천원
	▷ 경비 = 4,238,262천원	▷ 경비 = 5,361,680천원
	▷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= 97,200천원	▷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= 771,000천원
	▷ 성과급(경영평가) = 1,062,066천원	▷ 성과급(경영평가) = 1,133,058천원
	- 사업비 = 421,573천원	- 사업비 = 1,829,819천원
	- 예비비 = 10,000천원	- 예비비 = 346,000천원

## 붙임

### □ 2021년도 120다산콜재단 출연금 세부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1년 예산(안)	비고
<b>총계</b>	<b>29,144,657</b>	
<b>사업비</b>	<b>1,829,819</b>	
<b>1. 시민중심 스마트 상담시스템 체계 구축 및 운영</b>	<b>1,508,408</b>	
<b>1-1. 상담정보시스템 운영</b>	<b>1,379,308</b>	
지급임차료	173,000	사무용 S/W 임차료
지급수수료	1,206,308	상담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등
<b>1-2. 스마트 상담 체계 구축</b>	<b>129,100</b>	
공공요금 및 제세	42,000	재택근무용 통신회선료
자산취득비	87,100	재택근무 노트북 구매
<b>2. 상담품질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</b>	<b>175,800</b>	
<b>2-1. 직원역량강화 교육</b>	175,800	
교육훈련비	157,800	직무 및 역량 교육, 서비스품질 향상교육 등
연구개발비	18,000	상담품질 점검 및 개선 연구 용역
<b>3.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</b>	<b>29,800</b>	
<b>3-1. 상담지식정보 현행화</b>	4,800	
도서인쇄비	3,000	상담 지식정보(DB)업데이트 매뉴얼 제작
회의운영비	1,800	상담 지식정보(DB) 간담회
<b>3-2. 상담데이터 분석 및 활용</b>	<b>25,000</b>	
연구개발비	25,000	상담데이터(이력) 활용방안 연구
<b>4.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강화</b>	<b>115,811</b>	
<b>4-1.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프로그램 운영</b>	115,811	
지급임차료	3,331	힐링룸 비품 렌탈(안마의자)
지급수수료	84,480	힐링룸 헬스키퍼(주·야간) 운영
교육훈련비	28,000	감정노동 보호프로그램 운영
<b>인건비</b>	<b>19,703,100</b>	
<b>급여</b>	<b>15,048,006</b>	임직원 월급여(460명: 420명+증원 40명), 식대교통비(상담직), 승진 가산금
<b>제수당</b>	<b>2,438,841</b>	직책(직급) 보조수당, 가족수당, 시간외근무수당 등
<b>기타직보수(업무직)</b>	<b>482,177</b>	14명 (12명+증원 2명)
<b>퇴직급여</b>	<b>1,734,076</b>	
<b>운영비</b>	<b>7,265,738</b>	
<b>경비</b>	<b>5,361,680</b>	복리후생비, 여비, 공공요금및제세, 수도광열비, 소모품비, 수선유지비, 포상금 등
<b>시설비 및 자산취득비</b>	<b>771,000</b>	청사환경 개선비, 정원증원 시스템 구축비 등
<b>성과급(경영평가 성과급)</b>	<b>1,133,058</b>	
<b>예비비</b>	<b>346,000</b>	